

[사 건 명] 행심 2013-12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3.7.12. 청구인에게 내린 학내봉사 10일, 특별교육이수(5시간)의 처분을 「학내봉사 7일, 특별교육이수(5시간)」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12. 청구인 ○○○ 등에게 내린 「학내봉사 10일 등」의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2013.4월경부터 건외 ○○○은 본인의 교복상의를 실수로 밟은 피해학생 ○○○에게 세탁비 및 수리비로 돈을 요구하면서 동급학생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 사건이 있었고, 2013.5.9. 건외 ○○○과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 교실로 찾아와 세탁비를 요구하며 폭행한 사실 등으로 2013.6.4.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함)에서 건외 ○○○을 포함한 가해학생 12명에 대하여 강제전학 등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나. 2013.6.21.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추가 조사 요청으로 △△경찰서의 조사를 받았고, 2013.7.1.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2013.5.9. 점심시간 식당 이동 중에 소외 ○○○ 등 3~4명이

모여 세탁비를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세탁비 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3.6.27자로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다.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부(父) ▽▽▽은 2013.7.8. 자치위원회 개최를 통보 받았으나, 재판중인 사건이므로 자치위원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니 연기해 달라는 말과 함께 2013.7.10. 자치위원회는 개인사정상 불참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2013.7.10. 개최 한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학내봉사 10일, 특별교육이수(5시간)”의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7.12. 이 사건 처분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결과가 2013.7.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3. 7. 22. 제기하였다.

II.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 1) 청구인은 단지 문제의 현장에서, 건외 ○○○과 피해학생이 말다툼하는 것을 중재하기 위해 “세탁비 줘”라 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린 것은 가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며, 2013.6.4. 자치위원회에서의 피해학생에게 폭행이 가해졌을 때 방관한 학생들에게 내린 학내봉사 5일의 처분과 비교해 보아도 청구인은 폭행이 있기 전에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한 것이 폭행당시의 다수의 방관자보다 가

중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에 부당하다.

- 3) 이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건은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가 아니고, 인천지방 소년부(법원)에서의 판단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아직 소년부에서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결이후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것은 위법하며, 또한 피청구인에게 추가 조사로 가해자로 지목 된 것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을 뿐더러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한 의견 청취도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내린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이고, 이는 2013.7.17. 자치위원회(성폭력관련)에서는 가해학생이 참석하지 않아 의견진술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결정을 유보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불공정한 처분이다.

나. 결론

- 1) 청구인은 작년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자로 거론이 되어 수차례의 조사 등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관련성이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 받았으나 학부모로서 학교 폭력에서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교육을 해왔고,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괴롭힌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말렸을 뿐이었는데 이번 처분이 내려진 것을 억울해 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학생인 ○○○에게 받은 괴롭힘으로 우울증과 '틱'까지 보이고 있다.
- 2) 피해학생에게 고의적·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기위한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말다툼의 중재를 위한 것인데, 진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없이 학교폭력현장에 일시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유책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의견수렴과 청문절차를 무시한 채 내려진 위법한 처분,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른 논리를 거론하며 공정성까지 심하게 훼손된 판단을 한 자치위의 처분은 부당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1) 이 사건은 4월경부터 건외 ○○○은 본인의 가디건을 밟은 피해학생에게 세탁비 및 수리비로 돈을 요구하였고, 5,000원을 받아내기도 하였으나, 더 받을 목적이었던 건외 ○○○ 등이 계속하여 피해학생을 괴롭힌 사건으로 2013.6.4. 자치위원회에서 건외 ○○○을 포함한 가해학생 12명에 대하여 강제전학 등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 2)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경찰서에서 수사협조 의뢰가 있어 청구인은 추가 조사를 받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비행혐의가 있어 2013.6.27자로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는 결과를 통지 받았으므로, 이는 명확한 학교폭력의 행위를 하였다는 입증 자료로 볼 수 있기에 본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해 학내봉사 10일 등의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 피해학생은 4월 초부터 10차례 이상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게 되었고, 피해학생은 두 달을 넘게 결석중이며, 인천의료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치료 등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학교폭력 비행혐의가 인정되어 2013.6.27자로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명백한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입증 자료로 볼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폭력이 행하여졌던 교실에 잠시 들러 피해학생에게 말을 하였

다는 사실로 자치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 1) 본 사안은 피해학생 한 명을 열두명의 가해학생이 둘러싸고 폭력, 폭언을 한 사안이고,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던진 말이라 하지만, 피해학생이 그 말을 청구인의 의도대로 들을 수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청구인의 “세탁비 줘”라고 했던 말은 피해학생을 돕기 위해 던진 말이라 판단하기 어려우며, 피해학생은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었기에 경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자치위원회에서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 2) 4월 초부터 가디건을 밟았다는 이유로 지속적, 집단적, 고의적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세탁비를 줘”라고 하는 청구인의 의도는 분명 세탁비를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주가담자의 의견을 동조하는 것이지, 중재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고, 또한 모든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돕고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학생을 괴롭히고자 하는 명백한 자리, 즉 폭력 및 폭언을 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언어를 선택하여 말하였다는 것은 분명 피해학생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 본 처분은 정당하다.
- 3)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은 관련 학생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며, 경찰의 조사로 비행 혐의가 인정이 되었고, 2013.6.4.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12명의 징계 조치를 한 것이다. 청구인은 지난 자치위원회의 형평성에 따라 준방관자에 해당이 되어 학내봉사 명령 10일등의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본 자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
- 4) 2013.7.10. 자치위원회 개최에 있어 청구인의 법적 대리인인 부모님께 유선 통화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참석을 요구하였고, 불참 시 의견 진술권이 포기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는데

청구인은 법원의 판단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치위원회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5)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적으로 피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청구인의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며, △△경찰서로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비행혐의를 인정하는 공문이 도달 한 상태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거하여 사안 발생 후 7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자치위원회를 연기 할 수 없었다.
- 6) 2013.7.17.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측과 피해학생측의 진술이 상반되고, ○○○학생은 본인이 피해 받은 사실만을 진술하였으나, 현재 병원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학생의 가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이에 본 자치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부족하여 조치를 유보하게 된 것이다. 2013.7.10. 자치위원회는 관련 근거가 충분하여 조치를 취하였고, 2013.7.17. 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불공정한 처분이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본교 자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

마. 결론

-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매 달 실시하고 있고,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친구를 놀리는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친구의 별명도 부르지 마라”라고 교육하고 있다. 이는 분명 2013.5.9. 학교폭력이 일어났던 교실에서 청구인이 행하였던 행동은 학교에서의 교육과 상반되는 행동이다. 한명의 피해학생을 둘러싸고 열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학생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였다고 하면, 피해학생은 분명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을 할 수 밖에 없고, “세탁 비 줘”라는 언어는 분명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지, 피해학생을 돕기 위해 또는 중재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로는 부적절하다 말할 수 있으며, 이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다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22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8조 제16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1) 2013.4월경부터 건외 ○○○은 본인의 교복상의를 실수로 뺏은 피해학생 ○○○에게 세탁비 및 수리비로 돈을 요구하면서 동급학생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사건이 있었고, 2013.5.9. 건외 ○○○과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 교실로 찾아와 세탁비를 요구하며 폭행한 사실 등으로 2013.6.4. ○○중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건외 ○○○을 포함한 가해학생 12명에 대하여 가담정도를 4단계로 나눠 강제전학 등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 2) 그 후 2013.6.21.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추가 조사 요청으로 △△경찰서의 조사를 받았고, 2013.7.1.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2013.5.9. 점심시간 식당 이동 중에 소외 ○○○ 등 3~4명이 모여 세탁비를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세탁비 쥐”라고 말

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3.6.27자로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 3) 2013.7.10. 자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먼저,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세탁비 줘”라고 말한 것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4월 초부터 가디건을 뺀 이유로 지속적, 집단적, 고의적인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② 청구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해학생 한 명을 열 명 정도의 가해학생이 둘러싸고 세탁비를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③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주가담자인 건외 ○○○의 말에 맞장구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했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가해학생에게 위와 같이 말한 의도는 세탁비를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주가담자의 의견을 동조하는 것이지, 중재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고, 또한 모든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돕고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학생을 괴롭히고자 하는 명백한 자리, 즉 폭력 및 폭언을 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언어를 선택하여 말하였다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청구인의 행위는 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2)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학습권 보다는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이나, 피해학생이 극도의 정신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으로 해서 청구인이 입는 피해의 보호 보다는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과 학교폭력의 예방이라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 3) 다만, 청구인의 행위가 단지 일회성 언어폭력에 그친 점, 동일 건에 대한 2013. 6. 4자 자치위원회회의가 가담정도를 4단계로 나눠 처분한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무거워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여 지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